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업(대기분야)기술인력

Q 방지시설업(대기분야)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기술사 대체 가능 기술인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기술사 대체가능 기술인력중 “대기기사 취득후 대기오염방지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자”와 관련하여,

질의1 : 종사한자의 의미가 사업체에서 환경기술인이나 환경관련업체에서 관련업에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사람만 인정하는건지?...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가능한지?

질의2 : 환경업체에서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대기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대기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예)수질기사,대기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방지시설업 수질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대기분야방지시설업 및 대기환경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예)수질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대기분야 방지시설유지관리병행,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것은 아니며, 보조업무수행등...

A 대기기술사로 대체가 가능한 기술인력은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대기분야(대기분야 방지시설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등)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5년 이상)을 입증한 경우이며, 필수인력인 환경기사는 수질방지시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따라 “수질환경기사로 등록”된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한 중복선임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임되어 있는 수질분야에 대하여만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경소음이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때의 행정처분은?

Q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과 관련사항입니다. ○○현장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설현장인데, 현장 인근에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 인근 주거 및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배경소음이 평균적으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A)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로 인한 측정소음이 배경소음과 차이가 3dB(A)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측정소음과 배경소음 자체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인 65dB(A)를 초과할 경우 측정 소음과의 차이에 관계없이 행정처벌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 3장에 따라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가 2dB 이하인 경우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재측정하여야 하며, 여러차례 측정 후에도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의 차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소음의 규제 기준 초과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의 법적기준 준수여부는 배경소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측정소음에 보정치를 적용하며, 배경소음이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이상 크다면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중수도 설치 가능여부

Q ○○○공장에서 중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업용수로 사용한 물을 최종처리수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중수도를 거쳐서 공업용 용수 유입되는 관 중간에 중수도 라인을 조인시킨다고 하십니다. 중수도관을 공업용 용수관과 꼭 따로따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 용수관 중간에 중수도관을 조인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배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 시설이 법적인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고 물을 아끼기 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라면, 물을 효율적으로 아용하기 위한 중수도 취지를 감안할 때 사용상 문제나 위생 등에 지장이 없다면 설치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Q 저희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전문소각업체에 신고필증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된 업체에서 자기들은 바쁘니 사업장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보내 처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된 업체에서 어차피 자기공장에서 동일방법으로 처리하니 괜찮다고 합니다 처리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저희공장은 문제가 없는지 수집운반업체 및 최종 처리하는 소각 전문업체 위반사항이라면 위 업체들의 각각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기준위반으로 배출자, 수집·운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므로 영업정

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와 중간처리업자간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집·운반을 위탁하였다면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모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Q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에 의거하여 환경기술인은 3년에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전문업체)를 할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자체 환경기술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위탁관리를 할경우에도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한다면 3년에 1번있는 기술인 교육은 이수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위탁할 경우에 사업장에서 기술관리인 선임할 필요한 없다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대신 기술인교육을 3년에 1번씩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2. 공동방지사설을 설치하여 3개 사업장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을 별도선임하여야 하는지? 방지사설운영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3개사업장에서 별도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A •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67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함.

• 공동방지사설의 경우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관한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함.